

국립중앙도서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16. ~ 4. 27. (10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내용

- 2009년~2012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

(단위: 건)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1	7,949				(3)	7,949	3	5	1	1	1	-

※ 첨부서류 :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

감사처분 요구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	<p>○ 도서관자료 납본 및 등록업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자료는 ◆◆◆◆◆협회와 ■■■■협회를 통해 수집(대행납본)하거나 도서관에서 직접 수집(개별납본)하고 있는데, - 도서관은 납본자가 작성한 납본서(서지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재 작성하고 있고, 납본 확인 및 보상금 지급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납본증명서를 일일이 우송하는 등 납본 및 등록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 - 대행납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근거도 없이 임의로 협회에 일괄 입금처리하고 있어, 보상금 사고 발생시 도서관에서 보상해야 하는 책임문제 발생 - 미 납본자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납본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미납본 대응 조치 소홀 	<p>○ 개선요구 및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자가 '△△△△△시스템'에서 납본서(서지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바코드스캐너로 납본확인, 보상금 지급업무 전산화, 납본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납본등록업무 개선 - 보상금의 일괄지급, 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 마련 - 미납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강구
2	<p>○ 도서자료 DB 중복 구축 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자료 원문DB 구축 사업과 목차DB 구축 사업 간에 중복 구축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09~'11년간 총 643건의 목차 DB가 중복 구축됨(약 4,751천 원의 예산 낭비 결과) - 도서관의 DB 구축자료가 국회도서관 등 타 기관 DB 구축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 	<p>○ 주의요구 및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주의 - 타 기관과 DB자료가 중복 구축되지 않도록 연계 협력 강화
3	<p>○ 기증자료 수집 사업 용역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자료 수집 사업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용역 계약 조달 의의를 위한 용역비 추정금액 산출 시 원가 계산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추정금액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09~'11년간 약 58백만 원(추정)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기증받은 자료는 가능한 한 많은 도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재기증하여야 하는데, 기증받은 수량의 약 70%를 폐기하여 사업효과 감소 	<p>○ 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주의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4	<p>○ 외국도서 구입 사업 추진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도서 구입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닌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해왔고, 2005년~2012년(8년간) ◆◆◆◆가 계속선정 되었음 - 외국도서를 신간자료(14%)보다는 구도서(86%) 위주로 구입하고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2011년(3년간) 기간 중 32종 75책의 복본을 제대로 검색하지 않고 구입하는 등 외국도서 구입업무 소홀 	<p>○ 주의·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선정 방식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로 개선 - 신간도서나 희망비치도서 위주로 구입비중을 확대하고 복본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5	<p>○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적립금 및 예산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과와 미리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여야 하나, ‘10년 공익사업적립금이 지원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있어, 시행자인 ○○○○협회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전담 인력 인건비(4월~10월, 9,124,010원)를 임의로 집행하고 사후(11월)에 예산변경을 요청하였는데도, ▽▽▽▽문화과는 △△정책과와 협의도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12월)한 후 정산 확정하였음 - 또한,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수입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을 경우 이를 전액 세입 조치하여야 하나, 참가비 수입(22,320천 원) 중 일부(2,623천 원)를 계약서나 약정도 없이 추가 식대비 및 문자발송비 명목으로 사업대행업체에게 지급하였음 	<p>○ 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주의 - 향후 예산 및 보조금 집행관련 법령, 교부조건 준수
6	<p>○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사업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11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사업 보조사업자인 ◇◇◇◇복지관 등 4개 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일(‘10.3.23./’11.3.29.) 이전에 집행한 3월분 직원인건비 등 48,729천 원을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는데도, 도서관(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은 구두로 사전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하여 정산·확정하였고, - ‘10년~’11년 기간 중 ◇◇◇◇복지관 및 ○○○○복지관은 	<p>○ 시정·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주의 - 용도 외로 사용한 1,064,000원 환수 조치 -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과 정산 철저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p>보조금을 직원워크숍 경비 등으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1,064천 원)하였는데도, 도서관(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산·확정하였음</p> <p>-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상 보조금은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총액만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p>	
7	<p>○ 관서운영경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p> <p>-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건당 5,000천 원 이하, 자산취득비는 건당 500천 원 미만에 한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서운영경비 지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여(운영비 13건 110,719천 원, 자산취득비 4건 2,506천 원)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p> <p>-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이 20,000천 원 이상 50,000천 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총액 51,028천 원의 자료를 구입하면서 계약시기를 달리하여 20,000천 원 미만으로 분할 수의계약(도서 2건, 비도서 3건)하였음</p> <p>-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각 비목별 집행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비로 편성·집행해야 할 외국 웹 DB 구독비용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12건 625,196천 원)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p>	<p>○ 기관주의</p> <p>- 관련 규정 위반 관련 기관 주의</p> <p>-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편성·집행시 관련지침 준수</p>
8	<p>○ 도서관 소장 장서 전수조사 필요</p> <p>- 도서관은 납본, 구입, 기증 등을 통해 장서를 확충하고 있으며, 2012. 12월 현재 약 850만권의 장서를 보유 중</p> <p>- 2006년 및 2007년 일부 장서 점검결과 목록과 자료가 불일치(아동서·교과서 15.2%)하거나, 소재불명 자료(조선문 5.1%, '84 이전 일반자료 4.9%)가 발견되었는데도, 개관 이래 현재까지 장서 전체의 보유상태를 점검한 적이</p>	<p>○ 권고</p> <p>- 도서관 보유 전체 장서에 대해 장서 목록과 실물 자료의 일치여부 점검</p> <p>-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장서관리시스템 마련</p>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p>없으며 실제 보관 상태에 대한 관련 통계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장서 분실 방지 및 체계적 장서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체계적인 장서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9	<p>○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 참석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도서관 일부 직원은 2009년~2011년 기간 중에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 등에 참석하였는데도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6건/110천 원)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 -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직원은 2009년~2011년 기간 중에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외부회의 등에 참가하면서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p>○ 시정·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위반 관련자 주의 - 이중지급 출장비 110,000원 반납 조치
10	<p>○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실 운영을 위해 (주)□□□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잘못 산정하여 6,775,210원을 과소 징수함 - 「국유재산법령」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일반 경쟁에 부쳐서 최고가격으로 사용료를 응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서관 관내에서 영업 중인 구내식당, 북카페 등의 경우, 제안서 심사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상 최저요율(재산가액의 25/1000)로만 받고 있음 - 수의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직원공제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등 국유재산 법령을 위반하였음 	<p>○ 시정·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산정을 잘못하여 징수하지 못한 국유재산 사용료 6,775,210원 추가 징수 및 담당자 주의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에는 가격입찰을 포함한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 선정
11	<p>○ 도서관 이용객에 대한 응대서비스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12년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조사' 결과 소속기관 중 도서관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p>○ 현지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p>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직원 친절도 개선' 요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서관 직원의 이용객 응대 서비스 향상 필요 	<p>향상 방안 마련 시행</p>